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

발의년월일 : 2000. 7. 6.

발 의 자 : 김재영 의원외 6인

1. 제안이유

2000. 7. 1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키로 되어 있던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선택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둘에 따라 정례회 집회일시와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조정하여 의회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12월 5일에서 11월 25일로 조정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7월·8월중에 집회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9월·10월중에 집회하도록 개정(안 제4조).

나.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중에서 선택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5조).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8조, 제41조, 제118조, 제125조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19조의4, 제46조,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중 “7월·8월” 을 “9월·10월”로 하고, 같은조 제2호중 “12월 5일” 을 “11월 25일”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제1차 정례회” 를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집회) 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4조(집회) ----- ----- ----- -----.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8일에 집회 한다. 다만, 총선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u>7월·8월</u>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1. ----- ----- ----- <u>9월·10월</u> -----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u>12월 5일</u> 에 집회한다.	2. ----- <u>11월 25일</u> ----- -----
제5조(심의)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5조(심의) ①----- (삭) ----- ----- ②----- ----- -----